

체 육 시 설 관 리 규 정

제정 1989. 3. 1 개정 1994. 12. 22
 개정 1989. 5. 29 개정 1995. 5. 19
 개정 1990. 9. 17 개정 1999. 3. 4
 개정 1992. 3. 1 개정 2001. 6.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내 전 체육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운영방침) ① 체육시설은 본 대학의 체육교육 및 교직원의 체력향상을 위해 운영한다.

- 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
- ③ 체육시설의 이용시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체육시설은 제1항에 지장이 없는 한 외부인(단체)에 대한 대여 및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

제4조(운영조직) 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관장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관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부서
 - 체육관 운영계획의 수립
 - 시설 및 기구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용시간 배정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부서

제5조(관장) 총장은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체육담당 교원으로 보한다.

1. 체력측정실 운영
2. 체육수업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3. 기타 학생 체육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책임) ① 체육시설은 운영부서에서 관리 한다.

- ② 운영 부서의 장은 체육시설 관리책임자를 두며 제반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시설관리 부서장은 시설운영에 따른 기술지원 등 관리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 ④ 개인 또는 단체이용시 과실로 인한 시설의 파손 및 기구의 손망실시 해당자(단체)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체육시설 운영방안 협의 및 의견수렴
- 2. 기타 관리운영상 인정되는 지침사안 협의

제9조(이용) ① 체육시설은 본 대학의 체육수업, 학생 및 교직원의 체육활동, 각종행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외부인(단체)의 사용은 제1항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방법)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이용시간) 시설별 이용시간은 체육시설 이용 시간표(별표 1)에 의한다.

제12조(이용자복장) 체육목적에 위한 동시설의 이용은 운동복(화)장 이어야 하며 체육목적 외 이용시는 관계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복장을 할 수 있다.

제13조(내부시설 이용) 종목별 체육시설 및 내부 부속시설의 이용은 별도의 계획에 의거 운용한다.

제14조(회원제) 외부인의 체육시설 사용을 위하여 회원제를 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체육시설대여) 외부인(단체)이 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1주일전까지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제출한다.

제16조(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 사용승인을 받은자(단체)는 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는 사용 포기로 간주한다.

제17조(이용수칙) 체육시설 이용시 이용수칙에 관한 사항은 체육 시설별로 따로 정한다.

제18조(안전관리) ①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단체)에게 있다.

② 이용자(단체)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안전 요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별도의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이용 시간표

구 분		시 간	이 용 종 목
체 육 관	주경기장	06 : 00 ~ 08 : 30 12 : 00 ~ 14 : 00 16 : 00 ~ 21 : 30	농구, 배드민턴, 배구
	기타시설	06 : 30 ~ 21 : 30	탁구, 라켓볼, 체력단련, 조깅
테니스장		일 조 시 간	테니스
운 동 장		일 조 시 간	축구, 농구, 배구

